

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[환경미화(외부)]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

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[환경미화(외부)] 채용 최종
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8일

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

□ 최종합격자

분야	합격인원	최종합격자(전화번호 뒷자리)	예비합격자(전화번호 뒷자리)
환경미화 (외부)	1명	이○희(1313)	이○호(2993)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붙임1(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), 붙임2(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),
붙임3(공정채용확인서) 각 1부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각 1부
※ 기본증명서 발급 시 ‘상세’(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표시)로 발급
- 여권사진 1매(파일제출 / suvn@korea.kr)

□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

- 제출기한 : 2023. 12. 15.(금) 10:00
-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
- 제출장소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 채용담당자(043-901-6114)
※ 주소 : (우28678)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, 청렴연수원

□ 유의사항
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결격사유 발생 등 사유로 청렴연수원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근무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,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	
청렴연수원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		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		
수집·이용 항목 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	수집·이용 목적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	보유기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		
☐ [필수] 민감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		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수집·이용 목적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보유기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		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		
수집·이용 항목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수집·이용 목적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보유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		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		
20 년 월 일 성명: (서명 또는 인) 청렴연수원장 귀하		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표준기준제25조(채용
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
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 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청렴연수원장 귀하

공정채용 확인서

본인은 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지원함에 있어 청렴연수원의 채용 관련 기준 및 계획을 준수하고,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·위법한 방식으로 전형절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민·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청렴연수원장 귀하